

December 15, 2020

## Legal Update

### Policy and Law Report \_Vol.65

####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12. 7. ~ 12. 11.) -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 [금융위1]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2020. 12. 7.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 부여, ②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 제고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보도자료



[참고자료]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방안



### [금융위2]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2020. 12. 7.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021년도 공급계획, ② 2020년 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③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④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금융위3]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0. 12. 10. 금융위원회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제도의 디지털화 필요성 제기, ②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공정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양 방향(two-way)”으로 규제·제도 개선 등이 있음

## < 주요 개선과제 >

| ① 규제차익 해소 분야            | ②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
|-------------------------|-------------------------|
|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 보험 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
|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     |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
|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 건강정보 활용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분담 형평성 제고 |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
|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리스크 관리    |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

### [참고자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개보위]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2020. 12.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개인정보 DB의 탐지·삭제 강화 등에 대한 대응책 추진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들이 자신의 웹사이트 계정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② 인터넷상에 해당 DB의 추가 게시·유통 여부를 지속 탐지·삭제하는 한편, 불법 DB를 상습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이 있음

### [참고자료]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



### [문체부] 2021년,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복원과 디지털 혁신 주력

2020. 12. 9.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콘텐츠 분야 중점 예산으로 편성함과 아울러 영화, 대중음악(K-pop), 게임, 방송영상 등 주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콘텐츠 창·제작 금융지원 확대로 콘텐츠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 ② 비대면·실감형 콘텐츠와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디지털혁신 가속화, ③ 콘텐츠 분야별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신한류 확산 기반 마련 등이 있음

### [참고자료] 2021년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복원과 디지털 혁신 주력



## [과기부 · 외교부] 2020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 개최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대표 등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2020년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뉴딜 정책방향, ② 과학기술 정책방향, ③ 과학기술 · ICT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④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정책방향 등이 있음

### [참고자료] 2020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 개최



##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포 법안

#### [법무부] 「공탁법」 개정령

[2020. 12. 8.]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 [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령

[2020. 12. 8.]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산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령

[2020. 12. 8.]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 · 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임. 이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 입법(행정)예고 법안

###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정안

환경부는 2020. 12. 7. 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에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등에 대해 행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에 적용될 평균온실가스 기준 및 연비 기준 등을 제시(안 제5조, 제6조), ② 연도별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③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연비 측정 프로그램 및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등이 있음

###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기부는 2020. 12. 9.부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대한 공개매수 및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를 입법예고함.

## > 법률 발의안

###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그 물품가격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승용자동차가 더 이상 부의 상징인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소비자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 [정무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산자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등14인)」**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제3자)은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장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고 제공받아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것임

### **[과방위]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과방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의원등10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과방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불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ntact us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